

## 결혼이주자의 내용적 시민권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적 취득 여부를 중심으로

김 석 준\*  
(가톨릭대학교)

김 휘 정  
(가톨릭대학교)

현 동 길  
(가톨릭대학교)

이 지 현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T. H. 마샬의 시민권 이론에 기초하여 결혼이주자의 시민권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에 기본적 사회권이라 할 수 있는 국적 취득을 형식적 시민권으로 보고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결혼이주자의 본질적 사회권 보장인 내용적 시민권을 경제·사회·정치적 시민권으로 세분화하여, 시민권의 형태가 발전할수록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목적을 위해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했으며,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경제적 요소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국적 취득 집단은 비취득 집단에 비해 경제·사회·정치적 시민권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자의 형식적 시민권 보장이 이들의 생활 영역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국적 취득이 이들의 내용적 시민권 보장의 전제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를 위한 실천적 함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결혼이주자, 국적 취득, 생활만족도, 형식적 시민권, 내용적 시민권

\* 교신저자: 김석준, 가톨릭대학교(welfare@catholic.ac.kr)

■ 투고일: 2015.1.30    ■ 수정일: 2015.3.18    ■ 게재확정일: 2015.3.26

## I. 서론

현대사회에서 국경은 예전만큼 큰 장벽이 아니다. 교통과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잠재적 활동 반경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으며, 국제이주는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었다. 한국 역시 근 10년 간 이주민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 주로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였으나, 최근 노동시장의 상황이 변화하면서 한국에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였다(조희원, 2014). 또한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과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된 국제결혼은 1990년대 초 농촌총각과 조선족 여성을 ‘짜지어주는’ 운동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박은희·조인주, 2012).

그러나 단일민족 자부심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자들이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황정미, 2010).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지적하듯, 한국은 인종차별적 성격이 내포된 ‘단일민족국가 정체성’을 사회제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단일민족에 대한 자긍심은 이주민을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를 약화시키며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황정미, 2010). 다른 문화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결혼이주자는 한국사회에 참여하는 데에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결혼이주자에게 있어 배우자는 한국에서의 생계유지 및 국적취득,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결혼이주자가 한국에 정착함에 있어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은 안전망인 동시에 장벽이 되기도 한다.

결혼이주자는 친숙한 언어와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의 정보와 자원으로부터 소외되어(김나영, 2007), 국적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남인숙·안숙희, 2011). 또한 언어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은 점차 감소해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결혼이주자가 한국 생활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여성가족부, 2013). 이러한 장애물은 결혼이주자의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 즉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은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되나, 대체로 개인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생활조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Cohen & Wills, 1985)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가 연령, 학력, 한국어 실력 등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차별, 사회참여 경험, 부부 간 의사결정

등의 사회적 요인(강현, 2012; 김경미, 2012; 김나영, 2007; 김연희·서영준, 2014; 김진희·박옥임, 2008; 박미정·엄명용, 2009; 박은희·조인주, 2012; 오금숙·김윤정, 2013; 우지혜, 2014)에 의해 유의하게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개인의 행복 수준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만족은 많은 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주제로 손꼽힌다. 최근까지도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은 사회통합에 대한 제도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의 사회적 영향요인을 개인 혹은 가족, 사회 간 ‘관계망’에 집중하여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계적 접근에서 한 발 나아가 결혼이주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제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환경에 주목하고자 한다. 결혼이주자의 한국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 국적의 취득과 그에 따른 권리의 차이는 결혼이주자의 생활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만하다.

대부분의 국가가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속인주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듯 결혼이주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박진근, 2013). 결혼이주자에게 있어 국적 취득은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법적인 방법은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적 지위는 결혼이주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즉, 국적에 따라서 경제·사회·정치적 권리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자의 국적과 권리에 대한 논의는 시민권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Soysal(1994)과 Jacobson(1997)은 전 세계적 이주 현상에 발맞춰 시민권이 변모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적을 초월하여 범지구적 차원에서 작용하는 ‘인권에 기초한 시민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Bosniak(2002)은 시민권을 ‘법적 지위(legal status)’로서의 시민권, ‘평등(equality)’으로서의 시민권, ‘민주적 참여(democratic engagement)’로서의 시민권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는 이주민을 ‘법적 지위는 없지만 그럼에도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바라보았다. 설동훈(2007)은 시민권을 크게 형식적 시민권과 내용적 시민권으로 나눴는데, 형식적 시민권이란 이주노동자가 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공식적 권리이며, 내용적 시민권은 이주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경제·

사회·정치적 권리를 일컫는다.

시민권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법적 지위에 우선하여 인간으로서의 실질적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권이 이주자의 실질적 권리보장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자들의 법적 지위와 시민권 보장의 전제 조건인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이들의 시민권이 어떤 형태로 보장되어지며, 또 이들의 생활상에는 어떠한 형태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실증 연구는 찾기 드물다. 결혼이주자의 국적 취득에 관한 연구는 국내법상 이주자의 국적 취득이 어려운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박진근, 2013), 시민권에 대한 확장된 논의 역시 한국에서 이주자(혹은 이민자)가 보장 받는 시민권의 범위를 논하는 데 그친다(남지민, 2012; 설동훈, 2007; 2013). 특히 그간의 시민권 논의는 주로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결혼이주자의 시민권에 주목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결혼이주자의 국적 취득과 시민권 보장에 관한 논의는 이들 개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 및 지역 사회의 환경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자의 시민권 논의는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를 배제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이주정책의 첫 발걸음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내용적 시민권의 보장 정도가 달라지며, 이 차이가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을 시민권 요인으로 재구성한 후, 결혼이주자의 국적 취득에 따라 경제·사회·정치적 시민권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살펴보았다.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제도적 요인, 즉 시민권의 보장 수준에 따라 그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 결혼이주자의 시민권 논의에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생활만족도의 개념

생활만족도의 개념은 1961년 Neugarten과 그의 동료들이 활동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한 LSI(Life Satisfaction Index)라는 생활만족도 척도를 개발한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김나영, 2007; 박은희·조인주, 2012; 우지혜, 2014). 생활만족도의 개념은 연구자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크게 기대·성취 간 욕구의 충족 정도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개념과 주관적 안녕감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대와 성취의 충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학자들은 생활만족을 자기존재에 대한 평가이자 행복감을 포함한 복합적 개념이며(George, 1979), 삶을 의미 있고 기대했던 목적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정도, 환경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어려움 없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Kalrish, 1975)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기대한 바와 성취한 바가 일치할수록, 즉 욕구가 충족될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시사한다.

한편 욕구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주관적 정서 상태를 생활만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들은 생활만족을 일상을 구성하는 활동의 기쁨, 자기 생활에 대한 의미, 목표 성취감, 긍정적 자아상과 낙관적 태도 및 감정(Neugarten et al., 1961), 개인이 현재 느끼고 있는 주관적 정서 상태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라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등으로 정의한다(Diener, 2000). 각기 다른 비중을 차지하는 삶의 구체적 영역 속에서 느끼는 만족의 합을 생활만족이라고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Cummins, 1996; Rojas, 2006; Veenhoven, 2004).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이 경험하고 인지하는 주관적 삶에 대한 평가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생활만족도란 기대한 바와 현실적 욕구 간의 격차를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안녕감의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를 주어진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삶의 긍정적·부정적 경험과 감정의 '주관적 평가'로 정의, 사용하고자 한다.

## 2. 결혼이주자의 시민권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근대적 개념의 시민권은 T. H. 마샬(Marshall, 1964)이 정리, 발전시켰다. 마샬은 시민권이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의 세 가지 단계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첫 번째 단계인 자유권(civil rights)은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기본적 인권이다. 즉, 시민은 거주와 숙박 등에서 자유로운 신체적 자유, 계약을 통한 노동과 노동으로 축적한 사유재산 소유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 언론·출판 등 개인의 사상을 표현할 자유, 그리고 법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정치권(political rights)은 개인이 사회에 참여할 권리이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의 정치적 의사결정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치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권리라는 면에서, 주어진 틀 안에서 누리는 자유권보다 적극적인 권리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민권 발전의 마지막 단계는 사회권(social rights)이다. 이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장 뿐 아니라 사회가 개인의 부자유,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민권의 가장 확대된 형태라 볼 수 있다. 사회적 권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을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사회보장제도 등을 국민의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시민권은 일국의 구성원인 시민을 차별적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단합과 충성심을 키우고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국가의 경제 성장과 복지의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시대, 즉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한 국가 안에서 국적을 가진 국민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사회구성원이자 이주민인 사람들의 인권, 즉 시민권이 출신국과 거주국 중 어디에서 보장받아야 하는지, 시민권과 국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들의 권리가 제한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등 처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시민권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시민권의 '내용'뿐 아니라 '위치'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되었으며, 이주노동은 시민권의 개념을 재검토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이다혜, 2014). 이에 전 세계적 이주화 현상에 따른 시민권의 재정의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표 1. 시민권의 유형 및 정의

| 학자                           | 유형 및 정의                              |                            |                        |
|------------------------------|--------------------------------------|----------------------------|------------------------|
| Marshall(1964)               | 자유권                                  | 사회권                        | 참정권                    |
| Cohen(1999)                  | 민주주의 정치적 원칙으로서의 시민권                  | 사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              | 정치적 정체성과 공동체 성원으로서 시민권 |
| Bosniak(2002)                | 법적지위                                 | 평등으로서의 시민권                 | 민주적 참여                 |
| 설동훈(2007)                    | 형식적 시민권(법적지위)                        | 내용적 시민권(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시민권) |                        |
| Arendt(1973) <sup>1)</sup>   | 권리를 가질 권리(성원권, right to have rights) |                            |                        |
| Soysal(1994) <sup>2)</sup>   | 탈국가적 시민권(post-national membership)   |                            |                        |
| Kymlicka(1995) <sup>3)</sup> | 다문화주의 시민권(multicultural citizenship) |                            |                        |
| Jacobson(1997) <sup>4)</sup> | 초국가적 사람됨(universal personhood)       |                            |                        |

<표 1>에서와 같이 마샬의 시민권은 근대 국민국가의 시민권에 대한 것으로 이주민의 권리를 설명하지 못했으나, 후학들에 의해 특정 집단(국적, 인종, 언어, 종교 등)에 속하지 못한 이주민의 시민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ohen(1999)과 Bosniak(2002), 그리고 설동훈(2007)은 법적 지위 또는 성원의 자격이라는 관점에서 시민권과 평등, 참여, 구성원 및 기타 자격에 수반한 경제, 사회, 정치권이라는 관점에서의 시민권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먼저 Cohen(1999)은 시민권을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했다. 첫째, 민주주의 정치적

- 1) Arendt(1973)는 '권리를 가질 권리(right to have rights)'라는 구호를 통해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 권리, 즉 '성원권'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주장했다.
- 2) Soysal(1994)은 '탈국가적 시민권(post-national membership)'을 강조하였다. 인구의 국적이동에 따라 국가들은 기존 시민권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시민은 세계적 차원에서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지위,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Kymlicka(1995)의 다문화주의 시민권을 대표하는 국민 만들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째, 장기거주를 하는 어떠한 집단도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배제당하지 않는다.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에는 국가의 동등한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일종의 사회문화적 통합은 가볍게 진행되어야만 하는데, 주로 제도와 언어의 통합에만 연관되고 그 밖의 어떠한 관습들, 종교적 믿음 혹은 삶의 방식들에 대한 채택을 의미하지 않는다. 셋째, 소수 민족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사회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신들 고유의 민족 만들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박현숙, 2013:18-19에서 재인용).
- 4) Jacobson(1997)은 '초국가적 사람됨(universal personhood)'이란 개념을 사용하면서 인권에 기초한 법세계적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앞으로의 세계는 국민과 이주민의 구별이 사라지고 영토국가에 얽매이지 않는 복수의 유동적 소속을 누리면서 국제인권규범에 따르게 되고, 점차 국적과 결합된 시민권이 상실되리라는 것이다.

원칙으로서의(political principle of democracy) 시민권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동질의 정치적 위상과 권리를 가진 집단에게만 주어진다. 이 측면에서 특정적이며 배타적인 특성을 지닌다. 둘째, 사법적 지위로서의(judicial status of legal personhood) 시민권은 모든 시민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누구나 법 앞에서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는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다. 이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지역적이거나 정치적인 정체성을 띠지 않는다는 특징을 띤다. 셋째, 정치적 정체성과 구성원으로서의(form of membership and political identity) 시민권은 배타적이고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에게 주어지지만 그 정체성은 본질적(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범주이다. 그는 시민권의 특성이 국내외적 수준과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분해되고 재구조화되어 각 나라에 맞는 이상적이고 독특한 형태로 구성되며, 이 때 세 측면은 서로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Bosniak(2002)<sup>5)</sup>은 시민권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이주노동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녀는 시민권을 ‘법적 지위(legal status)’로서의 시민권, ‘평등(equality)’으로서의 시민권, ‘민주적 참여(democratic engagement)’로서의 시민권으로 분류했다. 또한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 관점에서 이주민은 법적 권리의 제한이 정당화되는 이들이나 평등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진 이주민 모두 법적 지위(국적)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바라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우리의 삶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점점 더 영토를 초월하고 있으므로 시민권 개념또한 국적 중심의 해석에서 벗어나 더욱 폭넓게 이해될 수 있는 관점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설동훈(2007)은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을 형식적 측면(정치공동체의 성원자격)과 내용적 측면(성원자격에 수반되는 자유권·사회권·정치권과 의무, 또는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관행)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국가별 이주노동자 정책과 제도, 현실을 분석하여 시민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의 후속연구(설동훈, 2013)에서는 형식적 측면의 법적 지위에 따라 내용적 시민권의 보장정도가 위계적으로 달라짐을 밝히고 있다.

시민권 관점에서 이루어진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자에 대한 생활만족도 연구는 거의

---

<sup>5)</sup> Bosniak(2002)의 시민권 분류방식에 따라 법적지위로서의 시민권과 평등으로서의 시민권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가치가 달라짐을 설명하고 있다. Bosniak의 시민권 분류는 이다혜(2014:211-212)의 정리 내용을 일부 발췌, 인용하였다.

되어있지 않다. 다만 설동훈(2007, 2013)과 남지민(2012)의 연구가 시민권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의 정책과 제도를 분석하고 있었다.

설동훈(2007)은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을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국가별 이주노동자 정책과 제도, 현실을 분석하여 시민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는 국민국가로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여러 제한을 두었지만,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여 기본적인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유권'이 보장된다고 보았다<sup>6)</sup>. 그러나 사회권은 합법 체류자인 결혼이주여성 일부에게만 집중되어있고, 예산부족을 근거로 외국인에게는 공공부조제도를 거의 적용하고 있지 않는 등 사회권의 실현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정권은 영주권을 얻은 뒤 3년 이상 체류한 자에게만 지방자치선거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다른 이주자들은 시민으로서 정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남지민(2012)은 결혼이주여성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에서 시민권을 형식적 측면(법적 지위)과, 내용적 측면(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의 형식적 시민권은 혼인귀화를 통해 엄격한 과정을 거쳐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여러 제한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내용적 측면의 시민권의 경우도 사회권과 정치권 모두 제한된 수준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이들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독립적인 시민으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

형식적 시민권을 중심으로 내용적 시민권을 분석한 설동훈(2013)은 법적지위에 따른 권리의 차이를 독일·일본·한국 간 이주노동자, 영주권자, 국적귀화자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로 대표되는 법적지위가 없는 이들은 직업선택과 같은 자유권, 사회 복지 등의 사회권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가 모두 제한되어 있으며, 사회공동체의 '주만'으로 인정받은 영주권자는 직업선택과 같은 자유권과 일부 정치권<sup>7)</sup>은 보장되었으나, 국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였기에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등의 사회권 및 대부분의 정치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국적을 취득

6) 설동훈(2007:403-404)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바꾸거나 직업을 전환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자유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일시취업 이주노동자와 영주이주(노동)자에게 차등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국가가 자국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약조건일 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나 시민권 침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7)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한 귀화자의 경우, 법률적으로는 모든 시민권적 권리를 취득하고 있어 법적지위에 따른 시민권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표 2. 국적 유무에 따른 권리보장수준

|            |                  | 이주노동자 | 영주자 | 귀화자 |
|------------|------------------|-------|-----|-----|
| 이민자로서의 권리  | 영주할 수 있는 권리      | ×     | ○   | ○   |
|            | 본국의 가족초청권        | ×     | ○   | ○   |
| 사회통합 교육 참여 | 언어 능력 향상 교육      | ×     | ○   | ○   |
|            | 사회·문화·역사·법 이해 교육 | ×     | ○   | ○   |
| 자유권·평등권    |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 ○     | ○   | ○   |
|            | 재산권              | ○     | ○   | ○   |
|            | 법 앞의 평등          | ○     | ○   | ○   |
| 근로의 권리     | 직업선택의 자유         | ×     | ○   | ○   |
| 사회복지의 권리   | 공공부조             | ×     | ×   | ○   |
|            | 사회보험             | ○     | ○   | ○   |
|            | 사회복지서비스          | ×     | ×   | ○   |
| 정치적 권리     | 지방자치 투표권         | ×     | ○   | ○   |
|            | 국회의원 선거권·피선거권    | ×     | ×   | ○   |
|            | 공무원으로 일할 권리      | ×     | ×   | ○   |
|            | 군복무              | ×     | ×   | ○   |
|            | 정당원 가입·활동        | ×     | ×   | ○   |

주: 설동훈(2013)을 재구성하였음.

상기와 같이 이주의 세계화 흐름에 따라 현대사회는 시민권의 개념 또한 국경을 초월하여 재정의,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과 확장된 개념에 따라 형식적 시민권과 내용적 시민권을 나누어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내용적 시민권인 자유권, 사회권, 정치권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이 인종에 따라 부여되는 속민주의 원칙을 따르는 한국사회에서 형식적 시민권 즉 영주권, 국적취득과 같은 법적 지위의 획득 없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법적으로 시민권으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시민권으로서의 권리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권리들에 대한 실질적 실현의 정도를 생활만족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권리라 할지라도 실생활에 녹아들어 개인이 자연스럽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도가 생활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국적과 관계없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경제·사회·정치적 권리의 행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때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불편과 차별, 좌절과 실패가 없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 3.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설동훈(2013)의 시민권 논의에 기초하여 재구성하고자 한다. 물론 경제·사회·정치적 권리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마셜이 시민권을 발전적 단계로 설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시민권에 대한 개념과 내용적 측면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온데 비해, 아직까지 시민권의 개념과 내용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면 앞에서 제시된 경제·사회·정치적 권리 내용을 일정 수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민권 이론에 기초하여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를 접근하려는 것은 기존의 논의를 보다 거시적인 제도적 환경, 그리고 권리의 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각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자 한다.

경제적 권리는 사유재산의 소유 및 처분 등과 같은 경제적 권리 행사의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결혼이주자의 소득, 재산 등의 경제상황과 경제활동, 경제적 의사결정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권리는 사회권적 시민권에 속하는 개념으로 핵심내용은 개인의 불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있다. 여기에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수준, 결혼이주자가 느끼는 불평등과 차별수준이 포함된다. 정치적 권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같은 단편적 수준이 아닌,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구성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재정의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참정권 제도는 외국인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권리 역시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혼이주자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참여와 정치적 의사결정을 정치적 권리로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앞서 논의되었던 시민권적 측면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사회·정치적 시민권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 한국어 실력으로 재구성하였다. 성별의 경우 대부분 선행연구들이 결혼이주여성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상대적으로 남성 결혼이주자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결혼이주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이나 관련 제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법적지위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연령의 경우,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가 대다수이다(권구영, 2012; 김나영, 2007; 김진희·박옥임, 2008; 김연희·서영준, 2014; 박미정·엄명용, 2009; 박은희·조인주, 2012; 오금숙·김윤정, 2013; 유은광·김혜진·김명희, 2012).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김경미, 2012; 강현, 2012; 우지혜, 2014).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김나영, 2007; 김경미, 2012; 강현, 2012; 박은희·조인주, 2012)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오금숙·김윤정, 2013; 유은광·김혜진·김명희, 2012)가 혼재하고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경제적 안정성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박희봉·이희창, 2005; Veenhoven, 2004). 선행연구에서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강현, 2012; 김경미, 2012; 장은애·최영, 2010). 한국어 능력의 경우, 한국어 실력이 좋지 못할 경우 가족갈등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권구영, 2012; 김진희·박옥임, 2008),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김나영, 2007; 김경미, 2012; 장은애·최영, 2010).

경제적 시민권 측면에서 재구성된 생활만족도 요인은 주택점유 형태, 생활격차, 경제적 의사결정, 취업 여부이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박희봉·이희창, 2005; Veenhoven, 2004). 생활격차는 결혼이주자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모국과 한국에서의 경제사회적 지위 격차를 뜻한다. 결혼이주자의 생활격차가 심한 경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양진향 외, 2012), 문화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권구영, 2012; 박은희·조인주, 2012). 경제적 의사결정은 가족관계 내에서 소득,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 수준을 말한다. 결혼이주자들은 정착과정에서 경제적 참여욕구가 높게 나타나며(오은주·정순희,

2014), 경제적 의사결정권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권구영, 2012; 우지혜, 2014). 취업여부의 경우, 미취업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김경미, 2012; 우지혜, 2014)와 취업한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김연희·서영준, 2014)가 혼재하고 있다.

사회적 시민권은 사회적 차별경험, 사회서비스 경험, 사회서비스 욕구, 다문화 수용성, 사회보험 수혜 여부로 살펴봤다. 이들 변수는 결혼이주자가 느끼는 사회적 불평등, 차별, 그리고 사회적 보호 및 지원 수준의 측면에서 사회적 시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출신국적, 언어 구사능력, 인종 등과 관련된 차별경험은 결혼이주자의 심리적 갈등,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김경미, 2012; 우지혜, 2014; 장은애·최영, 2010). 선행연구에서는 차별경험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미, 2012). 사회서비스 경험은 결혼이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다(박미경·엄명용, 2009; 우지혜, 2014). 사회서비스 욕구가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김안나·최승아(2012)는 결혼이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적, 연령, 교육수준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은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질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장은애·최영, 2010). 사회보험 수혜 여부와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국적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에 제한을 받고 있어(구인회 외, 2009), 국적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시민권 측면에서 재구성된 변수는 사회참여, 투표경험이다. 사회참여는 생활만족도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김나영(2007)은 사회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반면, 우지혜(2014)는 사회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투표경험이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지만, 오현수(2012)는 결혼이주자의 적응과정이 제도적 토대 위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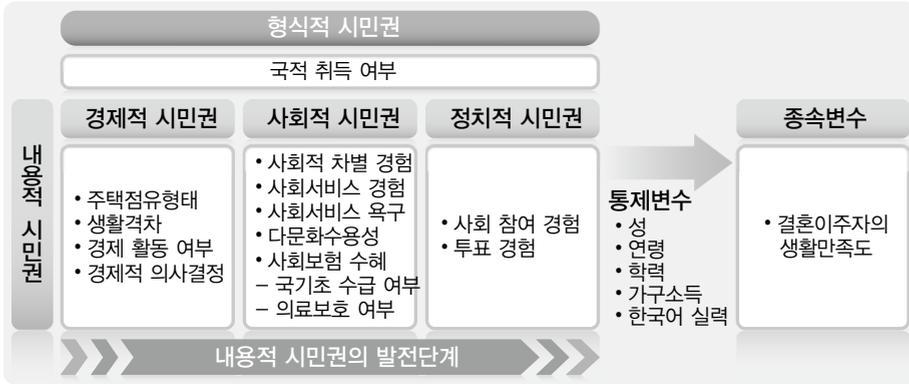
본 연구는 결혼이주자의 기본적 사회권 보장인 국적 취득 여부를 형식적 시민권으로 보고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결혼이주자의 본질적 사회권 보장인 내용적 시민권을 경제·사회·정치적 시민권으로 세분화하여, 시민권의 보장 형태가 발전될수록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 또는 집단에 소속된 계층에게만 부여하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자격으로서의 시민권을 ‘형식적 시민권’이라 정의하고, 그 범위를 본 연구의 대상인 결혼이민자의 비자종류, 체류자격 등에 상관없이 ‘국적 취득’ 여부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배우자<sup>8)</sup>로서의 체류자격이나 영주권이 국적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시민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용적 시민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본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시민권을 의미한다. 내용적 시민권은 마샬의 논의에 따른 자유적, 사회적, 정치적 시민권의 영역에서의 권리 구현 정도를 설동훈(2013)의 분류에 기초하여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시민권 형태로 변환한 후 이에 부합하는 변수를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시민권 영역의 세부적 하위 변인은 아래 [그림 1]에 상세히 담았다.

---

<sup>8)</sup> 국민의 배우자 비자는 최초 1년씩 2회를 연장할 수 있으며, 2년 후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신청 시에는 배우자의 출석과 신원보증, 동거여부확인 등이 필요하다. 국민의 배우자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적취득과 달리 내용적 측면의 시민권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법적 지위는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위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 연령, 학력, 가구소득, 한국어 실력을 통제변수로 삼았고, 독립변수인 시민권의 보장 형태는 선행연구에서의 논의에 기초하여 각각 경제·사회·정치적 시민권으로 나누어 보았다. 종속변수는 결혼이주자의 삶의 질을 대표하는 척도인 생활만족도이다. 분석 방법은 형식적 시민권, 즉 국적 취득 여부를 중심으로 집단을 둘로 나눈 후, 각 집단의 내용적 시민권이 발전 단계에 따라 어떤 양상을 띠는지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했다.

## 2.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 가.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는 결혼이주자들이 고려한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으로 5점 리커트 척도 1개 문항으로 측정됐다.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대상자의 생활만족도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64점으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는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6.8%였던 반면, 동일 조사 대상을 기준으로 2012년에는 52.1%로 감소하였다. 반면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2009년 6.9%에 비해 2012년 7.6%로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9년 조사에 비해 결혼이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 나. 독립변수: 내용적 시민권의 형태

### 1) 경제적 시민권

경제적 시민권의 세부적 하위변인은 주택점유형태, 생활격차, 경제 활동 여부, 경제적 의사결정으로 보았다. 주택점유형태는 자가와 기타(전세, 반전세, 월세, 무상임대 등)로 나누어 보았다. 생활격차는 모국과 한국에서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10점 척도로 측정된 뒤, 한국에서의 생활수준 점수와 모국에서의 생활수준 점수의 차이로 보았다. 값이 양수로 나오면 모국에서보다 한국에서의 경제적 권리와 만족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며, 음수가 나올 경우 모국에서의 생활수준을 높게 보는 것으로 간주했다. 경제 활동 여부는 결혼이주자들의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가변수(dummy variable) 형태로 살펴보았다. 경제적 의사결정은 생활비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결혼이주자와 배우자 사이에서의 의사결정이 동등하거나 본인이 하는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치우쳐 있는지를 가변수 형태로 변환했다.

### 2) 사회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은 사회적 차별 경험, 사회서비스 경험과 욕구, 다문화 수용성, 사회보험 수혜 여부로 보았다. 사회적 차별 경험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차별 경험의 여부를 가변수 형태로 바꾸었다. 결혼이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는 가정방문 교육,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사회 적응 교육, 통번역 서비스 지원,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 교육, 언어발달 지원 및 이중 언어 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 사회활동 지원, 각종 상담, 일자리 교육 및 연계 등 10가지 사회서비스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수혜경험 여부를 가변수 처리한 후 이를 합산하였다. 사회서비스 욕구는 개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자기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동화주의적 입장에 대한 응답으로 6점 척도로 측정했다. 사회보험 수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호 지원(건강보험 제외)을 받은 경험으로 각각 가변수 형태로 변환하여 측정했다.

### 3) 정치적 시민권

정치적 시민권은 사회참여 경험, 투표 경험으로 보았다. 사회참여 경험은 모임이나 활동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 모국인 친구 모임, 지역 주민 모임, 봉사·취미활동, 민간단체·정당·노동조합 등 단체활동 참여 여부의 합으로 보았다. 투표 경험은 한국에서 투표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무응답은 귀화자가 아니거나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이 되지 않아 투표의 자격이 없는 응답자이다. 투표 유경험자의 전체 비율은 49.1%이다.

## 다.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 연령, 학력, 가구소득, 한국어 실력으로 보았다. 성은 남성을 준거변수로 한 가변수 형태로 변환하였으며, 연령은 응답자의 만 나이, 학력은 무학부터 대학원 졸업 이상까지를 7단계로 나누어 서열변수의 형태로 만들었다. 가구소득은 소득을 100만원 단위로 쪼개어 100만원 미만부터 400만원 이상까지 5단계로 나누어 측정했다. 한국어 실력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능력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후, 이를 합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다고 간주하였다.

표 3. 변수 정의

| 구분      | 변수       | 내용                                   | 측정                                 |
|---------|----------|--------------------------------------|------------------------------------|
| 종속변수    | 생활만족도    | 결혼이주자들의 현재 생활 만족 수준                  | 5점 척도                              |
| 독립변수    | 경제적 시민권  | 주택점유형태                               | 현재 거주중인 주택 점유 형태<br>0 = 기타, 1 = 자가 |
|         | 생활격차     | 모국과 한국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와 만족도 차이(범위 0~10)  | 10단계 서열화,<br>한국-모국 생활격차            |
|         | 경제 활동 여부 | 결혼이주자들이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 0 = 아니다,<br>1 = 그렇다                |
|         | 경제적 의사결정 | 생활비 지출에 대한 가족 내 경제적 의사결정 방식          | 0 = 배우자 중심,<br>1 = 본인 또는 동등        |
| 사회적 시민권 | 사회적 차별   |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 | 0 = 없음, 1 = 있음                     |
|         | 사회서비스 경험 | 10가지 교육·지원 사회서비스 경험 유무(범위 0~10)      | 10개 문항 합산                          |
|         | 사회서비스 욕구 | 10가지 교육·지원 사회서비스 욕구 수준(범위 0~50)      | 5점 척도, 10개 문항 합산                   |

| 구분         | 변수            | 내용   | 측정                          |
|------------|---------------|--|-----------------------------|
|            | 다문화 수용성       | 동화주의적 관점에 대한 응답                                    | 6점 척도                       |
|            | 사회보험<br>수혜 경험 | 국민기초<br>의료보호<br>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보호<br>수혜 경험         | 0 = 없음, 1 = 있음              |
| 정치적<br>시민권 | 사회참여 경험       | 모임이나 활동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br>(범위 0~5)                   | 0 = 없음, 1 = 있음,<br>5개 문항 합산 |
|            | 투표 경험         | 한국에서 투표한 경험  | 0 = 없음, 1 = 있음              |
| 통제변수       | 성             | 결혼이주자의 성별  | 0 = 남자, 1 = 여자              |
|            | 연령            | 결혼이주자의 만 나이  | 연속변수                        |
|            | 학력            | 결혼이주자의 학력  | 7단계 서열변수                    |
|            | 가구소득          | 결혼이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 5단계 서열변수                    |
|            | 한국어 실력        | 결혼이주자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br>에 대한 주관적 한국어 실력(범위 0~20) | 5점 척도,<br>4개 문항 합산          |

### 3.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raw-data)이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다문화가족 15,341가구를 표본으로 이 중 결혼이주자는 총 15,001명(여성 12,531명, 남성 2,470명)이다(여성가족부, 2013). 원자료에는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상태, 사회참여 경험, 가족초청 경험, 언어 사용, 주관적 건강상태, 생활만족도 등이 조사되어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시민권적 관점에서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적절한 형태로 변환(recode)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2.0이다. 표본의 전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원자료 전체의 결혼이주자 15,001명을 한국 국적의 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눈 후,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결혼이주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측정했다. 이후 생활만족도와

예측 요인들 간의 집단 차이를 살피기 위해 집단 간 평균 비교(t-test)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내용적 시민권의 형태를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했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최초 모형에서 새로운 요인이 추가되었을 때, 이전 단계와 비교해서 설명력의 변화( $R^2$  change)와 모형 변화(F change)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살피는 분석이다. 이 때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상관계수와 허용 오차(Tolerance) 및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했다. 분석에서의 모든 유의수준은 95%로 설정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결혼이주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결혼이주자 15,001명 가운데 국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9,172명(61.1%),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829명(38.9%)으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국적 취득 여부를 중심으로 일반적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성별은 '이주의 여성'이라는 말에 걸맞게 두 집단 모두 여성 결혼이주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국적이 없는 집단이 평균 35.35세, 있는 집단은 평균 39.66세로 국적이 있는 집단의 평균 연령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학력별로는 두 집단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지만, 국적이 없는 집단의 대졸자 이상 집단이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국적이 없는 집단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국적이 있는 집단은 100~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끝으로 응답자의 주관적 한국어 실력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쓰기' 실력이 낮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모두 국적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과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춰야만 귀화의 요건이 충족되는 국적법(출입국 관리법)의 성격과 함께 국적이 있는 집단의 한국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4.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결혼이주자의 일반적 특성

| 변인           | 구분           | 국적 없음    |       |         | 국적 있음   |       |         | t/p        |           |           |
|--------------|--------------|----------|-------|---------|---------|-------|---------|------------|-----------|-----------|
|              |              | 빈도(명)    | 비율(%) | 평균(SD)  | 빈도(명)   | 비율(%) | 평균(SD)  |            |           |           |
| 성            | 남            | 1,624    | 17.7  | .82     | 846     | 14.5  | .85     | 5.143***   |           |           |
|              | 여            | 7,548    | 82.3  | (.382)  | 4,983   | 85.5  | (.352)  |            |           |           |
| 연령           | 10대          | 72       | 0.8   | 35.35   | 95      | 1.6   | 39.66   | 22.886***  |           |           |
|              | 20대          | 3,205    | 34.9  |         | 1,080   | 18.5  |         |            |           |           |
|              | 30대          | 2,928    | 31.9  |         | 2,028   | 34.8  |         |            |           |           |
|              | 40대          | 1,969    | 21.5  |         | 1,603   | 27.5  |         |            |           |           |
|              | 50대          | 757      | 8.3   |         | 587     | 10.1  |         |            |           |           |
|              | 60대 이상       | 241      | 2.6   |         | 436     | 7.5   |         |            |           |           |
| 학력           | 무학           | 128      | 1.4   | 3.32    | 90      | 1.5   | 2.98    | -16.076*** |           |           |
|              | 초등학교 졸업      | 637      | 6.9   | (1.351) | 442     | 7.6   | (1.161) |            |           |           |
|              | 중학교 졸업       | 1,569    | 17.1  |         | 1,232   | 21.1  |         |            |           |           |
|              | 고등학교 졸업      | 3,339    | 36.4  |         | 2,604   | 44.7  |         |            |           |           |
|              | 대졸(4년제 미만)   | 1,207    | 13.2  |         | 734     | 12.6  |         |            |           |           |
|              | 대졸(4년제 이상)   | 1,879    | 20.5  |         | 647     | 11.1  |         |            |           |           |
| 가구소득         | 대학원 이상       | 413      | 4.5   |         | 80      | 1.4   |         | -16.812*** |           |           |
|              | 100만원 미만     | 711      | 7.8   | 4.21    | 819     | 14.1  | 3.77    |            |           |           |
|              | 100~200만원 미만 | 2,573    | 28.1  | (1.649) | 1,867   | 32.0  | (1.460) |            |           |           |
|              | 200~300만원 미만 | 2,978    | 32.5  |         | 1,735   | 29.8  |         |            |           |           |
|              | 300~400만원 미만 | 1,472    | 16.0  |         | 878     | 15.1  |         |            |           |           |
| 한국어 말하<br>실력 | 기            | 400만원 이상 | 1,438 | 15.7    |         | 530   | 9.1     |            | 41.282*** |           |
|              |              | 매우 못한다   | 583   | 6.4     | 3.32    | 37    | 0.6     | 4.11       |           |           |
|              |              | 못한다      | 1,782 | 19.4    | (1.210) | 255   | 4.4     | (.999)     |           |           |
|              | 듣기           | 보통이다     | 3,092 | 33.7    |         | 1,354 | 23.2    |            |           | 39.431*** |
|              |              | 잘한다      | 1,529 | 16.7    |         | 1,213 | 20.8    |            |           |           |
|              |              | 매우 잘한다   | 2,186 | 23.8    |         | 2,810 | 48.2    |            |           |           |
|              |              | 매우 못한다   | 445   | 4.9     | 3.43    | 37    | 0.6     | 4.16       |           |           |
|              |              | 못한다      | 1,509 | 16.5    | (1.172) | 255   | 4.4     | (.968)     |           |           |
|              |              | 보통이다     | 3,175 | 34.6    |         | 1,354 | 23.2    |            |           |           |
|              | 읽기           | 잘한다      | 1,715 | 18.7    |         | 1,289 | 22.1    |            |           | 35.432*** |
|              |              | 매우 잘한다   | 2,328 | 25.4    |         | 2,894 | 49.6    |            |           |           |
|              |              | 매우 못한다   | 809   | 8.8     | 3.26    | 127   | 2.2     | 3.97       |           |           |
|              |              | 못한다      | 1,825 | 19.9    | (1.256) | 526   | 9.0     | (1.119)    |           |           |
|              | 쓰기           | 보통이다     | 2,850 | 31.1    |         | 1,394 | 23.9    |            |           | 34.356*** |
|              |              | 잘한다      | 1,582 | 17.2    |         | 1,123 | 19.3    |            |           |           |
| 매우 잘한다       |              | 2,106    | 23.0  |         | 2,659   | 45.6  |         |            |           |           |
| 매우 못한다       |              | 1,261    | 13.7  | 2.98    | 287     | 4.9   | 3.72    |            |           |           |
| 못한다          |              | 2,344    | 25.6  | (1.304) | 837     | 14.4  | (1.262) |            |           |           |
| 전체           | 보통이다         | 2,620    | 28.6  |         | 1,437   | 24.7  |         | -          |           |           |
|              | 잘한다          | 1,190    | 13.0  |         | 907     | 15.6  |         |            |           |           |
|              | 매우 잘한다       | 1,757    | 19.2  |         | 2,361   | 40.5  |         |            |           |           |
| 전체           |              | 9,172    | 100.0 | -       | 5,829   | 100.0 | -       | -          |           |           |

주: \*\*\*  $p < .001$

## 2. 주요 변수별 집단 간 차이

국적의 취득에 따라 국적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 사이의 차이에 대해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투입된 변수 가운데 생활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과 사회 참여 활동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관측되었다.

먼저 생활만족도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집단이 취득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을 중심으로 한 생활만족도 연구는 전무하나, 이는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만족도가 점차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장은애·최영, 2010)와 유사하다. 주택점유형태 역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집단이 취득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비교해보았던 집단 간 가구소득의 차이와 유사한 결과이다. 생활격차의 경우 역시 국적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은 한국 생활에 더 만족해하는 한편, 국적이 있는 집단은 모국에서의 생활수준이 더 높다고 여겼으며,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의 경우는 국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비교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의사결정은 본인이나 동등한 형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별 경험은 국적을 취득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경험과 욕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집단이 국적을 취득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자의 동화주의에 대한 반응인 다문화 수용성 측면에서는 국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지만, 정명희 외(2012)에서는 여성 이주자의 동화수준이 남성에 비해 높으며, 동화수준이 높을수록 관계능력이 향상되고 개방성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로 미뤄볼 때,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개방성도 높아진 국적 취득 집단은 상대적으로 다문화 수용성도 높을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사회보험 수혜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호 혜택 모두 국적이 있는 집단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사회보험에서의 보호 혜택도 더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참여 경험은 국적이 없는 집단이 더 높았으나, 투표 경험은 국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더 높았다.

표 5.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별 집단 간 차이

| 변인        | 구분        | 국적 없음        |              |          | 국적 있음        |              |          | t/p        |
|-----------|-----------|--------------|--------------|----------|--------------|--------------|----------|------------|
|           |           | 빈도(명)        | 비율(%)        | 평균(SD)   | 빈도(명)        | 비율(%)        | 평균(SD)   |            |
| 생활만족도     | 매우 불만족    | 119          | 1.3          | 3.79     | 142          | 2.4          | 3.53     | -16.396*** |
|           | 불만족       | 412          | 4.5          | (.933)   | 420          | 7.2          | (.964)   |            |
|           | 보통        | 3,217        | 35.1         |          | 2,615        | 44.9         |          |            |
|           | 만족        | 2,962        | 32.3         |          | 1,515        | 26.0         |          |            |
|           | 매우 만족     | 2,462        | 26.8         |          | 1,137        | 19.5         |          |            |
| 주택        | 기타        | 4,709        | 51.3         | .49      | 3,131        | 53.7         | .46      | -2.837**   |
| 점유형태      | 자가        | 4,463        | 48.7         | (.500)   | 2,698        | 46.3         | (.499)   |            |
| 생활격차      | 모국생활↑     | 2,359        | 25.7         | .06      | 1,628        | 27.9         | -.21     | -6.213***  |
|           | 동일        | 3,953        | 43.1         | (2.426)  | 2,280        | 39.1         | (2.481)  |            |
|           | 한국생활↑     | 2,533        | 27.6         |          | 1,450        | 24.9         |          |            |
|           | 결측값       | 327          | 3.6          |          | 471          | 8.1          |          |            |
| 경찰유무      | 없음        | 4,659        | 50.8         | .49      | 2,182        | 37.4         | .63      | 16.154***  |
|           | 있음        | 4,513        | 49.2         | (.500)   | 3,647        | 62.6         | (.484)   |            |
| 경제적 의사결정  | 본인 또는 동등  | 5,234        | 57.1         | .42      | 3,557        | 61.0         | .27      | -18.539*** |
|           | 배우자 중심    | 3,854        | 42.0         | (.494)   | 1,295        | 22.2         | (.442)   |            |
|           | 결측값       | 84           | 0.9          |          | 977          | 16.8         |          |            |
| 사회적 차별    | 없음        | 5,559        | 60.6         | .39      | 3,380        | 58.0         | .42      | 3.191**    |
|           | 있음        | 3,613        | 39.4         | (.489)   | 2,449        | 42.0         | (.494)   |            |
| 서비스 경험    | 없음        | 3,790        | 41.3         | 1.19     | 3,177        | 54.5         | .96      | -9.631***  |
|           | 있음        | 5,382        | 58.7         | (1.390)  | 2,652        | 45.5         | (1.417)  |            |
| 서비스 욕구    | 전혀 필요 없음  | 701          | 7.6          | 32.46    | 752          | 12.9         | 28.12    | -21.339*** |
|           | 필요 없음     | 1,099        | 12.0         | (11.897) | 1,189        | 20.4         | (12.513) |            |
|           | 보통임       | 1,851        | 20.2         |          | 1,330        | 22.8         |          |            |
|           | 필요함       | 2,918        | 31.8         |          | 1,414        | 24.3         |          |            |
|           | 매우 필요함    | 2,603        | 28.4         |          | 1,144        | 19.6         |          |            |
| 다문화 수용성   | 그렇지 않다    | 1,293        | 14.1         | 2.90     | 665          | 11.4         | 3.19     | 11.136***  |
|           | 별로 그렇지 않다 | 1,318        | 14.4         | (1.307)  | 726          | 12.5         | (1.354)  |            |
|           | 약간 그렇다    | 2,029        | 22.1         |          | 1,167        | 20.0         |          |            |
|           | 그렇다       | 1,187        | 12.9         |          | 867          | 14.9         |          |            |
|           | 매우 그렇다    | 1,020        | 11.1         |          | 1,006        | 17.3         |          |            |
|           | 결측값       | 2,325        | 25.3         |          | 1,398        | 24.0         |          |            |
| 국기초 수급여부  | 없음        | 8,879        | 96.8         | .03      | 5,433        | 93.2         | .07      | 10.300***  |
|           | 있음        | 293          | 3.2          | (.176)   | 396          | 6.8          | (.252)   |            |
| 의료보호 여부   | 없음        | 8,891        | 96.9         | .03      | 5,427        | 93.1         | .07      | 11.020***  |
|           | 있음        | 281          | 3.1          | (.172)   | 402          | 6.9          | (.253)   |            |
| 사회 참여     | 없음        | 2,762        | 30.1         | 1.17     | 1,957        | 33.6         | 1.14     | -1.642     |
|           | 있음        | 6,410        | 69.9         | (1.108)  | 3,872        | 66.4         | (1.135)  |            |
| 투표 경험     | 없음        | 563          | 6.1          | .41      | 2,040        | 35.0         | .65      | 14.539***  |
|           | 있음        | 395          | 4.2          | (.491)   | 3,789        | 65.0         | (.477)   |            |
|           | 무응답       | 8,224        | 89.7         |          | -            | -            |          |            |
| <b>전체</b> |           | <b>9,172</b> | <b>100.0</b> | <b>-</b> | <b>5,829</b> | <b>100.0</b> | <b>-</b> | <b>-</b>   |

주: \*\*\*  $p < .001$ , \*\*  $p < .01$ , \*  $p < .05$

### 3. 상관관계 분석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체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수준은 성, 연령, 학력, 가구소득, 한국어 실력, 주택점유형태, 생활격차, 경제활동 여부, 경제적 의사결정, 사회적 차별 경험, 다문화 수용성, 사회보험 수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 의료보호 수혜 경험), 사회 참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상관관계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볼 때,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인 경향성은 학력, 가구소득, 한국어 실력, 주택 점유 형태, 생활격차, 다문화 수용성, 사회참여였다. 이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가 주택을 점유하고 있을수록, 모국과 한국과의 생활격차를 보다 크게 경험할수록, 높은 수준의 다문화 수용성을 보일수록, 사회참여 활동을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띠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경향성은 성, 연령, 경제 활동 여부, 사회적 차별 경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 의료보호 수혜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 활동을 할수록, 사회적 차별 경험을 경험할수록, 사회보호의 수혜를 받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국적을 중심으로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면, 국적이 없는 집단은 경제적 의사결정과 사회서비스 경험, 정치적 시민권인 사회 참여와 투표 경험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국적이 있는 집단은 성, 사회서비스 경험, 투표 경험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관계의 경향성은 전체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은 성, 경제적 의사결정, 사회서비스 욕구와 사회 참여에 대한 상관관계의 유의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6.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                  |                   | 생활만족도    |         |         |
|------------------|-------------------|----------|---------|---------|
|                  |                   | 전체 결혼이주자 | 국적 없음   | 국적 있음   |
| 인구<br>사회학적<br>요인 | 성                 | -.028**  | -.031** | -.008   |
|                  | 연령                | -.130**  | -.106** | -.111** |
|                  | 학력                | .094**   | .068**  | .096**  |
|                  | 가구소득              | .214**   | .185**  | .224**  |
|                  | 한국어 실력            | .019*    | .054**  | .084**  |
| 경제적 시민권          | 주택점유형태            | .094**   | .061**  | .140**  |
|                  | 생활격차              | .135**   | .124**  | .139**  |
|                  | 경제 활동 여부          | -.049**  | -.035** | -.027*  |
|                  | 경제적 의사결정          | .009     | .017    | .049**  |
| 사회적 시민권          | 사회적 차별 경험         | -.130**  | -.130** | -.125** |
|                  | 사회서비스 경험          | .007     | -.013   | .011    |
|                  | 사회서비스 욕구          | .003     | -.021*  | -.019   |
|                  | 다문화 수용성           | .038**   | .052**  | .053**  |
|                  | 사회보험 수혜           | -.103**  | -.088** | -.100** |
|                  | 국기초 수급<br>의료보호 수혜 | -.105**  | -.089** | -.104** |
| 정치적 시민권          | 사회 참여             | .047**   | .005    | .105**  |
|                  | 투표 경험             | .001     | .004    | .008    |

주: \*\*  $p < .01$ , \*  $p < .05$

#### 4. 결혼이주자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본 분석에 앞서 국적 취득 여부가 결혼이주자 전체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분석해보았다. 그러자 한국 국적의 취득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33, p < .001$ ). 하지만 내용적 시민권 요인이 추가로 투입되자 그 영향력은 소멸됐다. 이는 국적 취득 이후에는 형식적 시민권보다는 내용적 시민권의 영향력이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하겠다.

다음으로 결혼이주자의 국적 취득 여부를 중심으로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을 탐색해보았다. 먼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집단에 대한 결과이다. 모형 1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투입한 것으로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의 수준은 8.4%, 모형 적합도( $F = 11.924$ )는 유의수준 9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다고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김경미, 2012; 장은애·최영, 2010)를 지지했다.

경제적 시민권 요인이 추가된 모형 2의 설명력은 12.0%로 모형 1에 비해 설명력의 변화량은 3.5%p 증가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F=9.727$ ) 및 모형 변화량( $\Delta F=6.478$ )의 유의수준은 99.9%에서 유의했다. 즉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경제적 시민권을 통한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를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시민권 요인 중에서는 생활격차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국에 비해 한국에서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할수록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 격차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구소득에 비해서도 더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적이 없는 상태인 결혼이주자들은 모국과 한국 생활 사이에서의 격차를 크게 느낄수록, 한국 생활에 대한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게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시민권 요인이 투입된 모형 3의 설명력은 14.5%이며, 경제적 시민권 요인이 추가된 모형 2에 비해 2.5%p의 설명력 증가가 나타났다. 또한 모형 적합도( $F=7.212$ ) 및 모형 변화량( $\Delta F=3.147$ )의 유의수준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사회적 시민권 요인이 추가됨에 따라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더 많이 설명할 여지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더불어 경제적 시민권 요인인 생활격차 역시 유의하여 모형 2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사회적 시민권 요인 가운데에서는 사회적 차별 경험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지 않을수록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시민권 요인이 새롭게 투입된 모형 4는 설명력이 14.6%로 요인 추가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는 1%p로 나타났다. 모형 4는 모형 적합도( $F=6.409$ )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새로운 요인의 투입에 따른 모형 변화량( $\Delta F=.480$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자 집단의 경우, 정치적 시민권의 설명요인 추가에 의한 모형 변화만으로는 이들의 생활만족도 변화 양상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권적 요인의 증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영향력에도 큰 변화가 감지되지 못했다. 이는 이들에게 있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과 같이 쉽게 변화되기 어려운 요인이 생활만족도를 매우 크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국적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내용적 시민권의 매우 일부 요인만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 실질적 의미에서의 시민권을 체감하지 못할뿐더러 이들의 생활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 하자면, 국적 취득이 아니어도 현재 결혼이주자를 위한 제도들의 내용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이들의 생활만족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이들의 사회적 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결혼이주자의 이주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이 주를 이루는 데, 생계와 직결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회·정치적 권리와 같은 시민권은 이들에게 부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시민권의 권리가 위계적 형태를 띠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7. 형식적 시민권을 갖추지 못한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 구분                 | 모형 1     |             | 모형 2     |                  | 모형 3     |                 | 모형4      |              |          |
|--------------------|----------|-------------|----------|------------------|----------|-----------------|----------|--------------|----------|
|                    | Beta(SE) | t           | Beta(SE) | t                | Beta(SE) | t               | Beta(SE) | t            |          |
| 인구<br>사회학적<br>요인   | 성        | .013(.090)  | .330     | .034(.094)       | .817     | .043(.098)      | .985     | .040(.100)   | .903     |
|                    | 연령       | -.116(.004) | -3.080** | -.098(.004)      | -2.572*  | -.111(.004)     | -2.835** | -.120(.004)  | -2.938** |
|                    | 학력       | -.013(.034) | -.309    | .019(.034)       | .473     | .028(.034)      | .677     | .023(.034)   | .558     |
|                    | 가구소득     | .223(.023)  | 5.317*** | .181(.023)       | 4.260*** | .157(.024)      | 3.612*** | .159(.024)   | 3.629*** |
|                    | 한국어실력    | .131(.009)  | 3.411**  | .132(.009)       | 3.458**  | .110(.009)      | 2.856**  | .106(.009)   | 2.731**  |
| 경제적<br>시민권         | 주택점유     |             |          | .044(.069)       | 1.142    | .035(.069)      | .909     | .033(.070)   | .866     |
|                    | 생활격차     |             |          | .185(.016)       | 4.765*** | .174(.016)      | 4.499*** | .175(.016)   | 4.485*** |
|                    | 경활유무     |             |          | -.012(.070)      | -.302    | -.003(.070)     | -.085    | -.007(.070)  | -.167    |
|                    | 경제적결정    |             |          | -.009(.075)      | -.238    | .000(.075)      | .005     | .001(.075)   | .021     |
| 사회적<br>시민권         | 사회적차별    |             |          |                  |          | -.102(.067)     | -2.701** | -.104(.067)  | -2.736** |
|                    | 서비스경험    |             |          |                  |          | .007(.023)      | .160     | .000(.024)   | .006     |
|                    | 서비스욕구    |             |          |                  |          | -.077(.003)     | -1.907   | -.075(.003)  | -1.877   |
|                    | 다문화수용    |             |          |                  |          | .017(.026)      | .466     | .019(.026)   | .506     |
|                    | 국기초수급    |             |          |                  |          | -.016(.238)     | -.320    | -.011(.240)  | -.211    |
|                    | 의료보호     |             |          |                  |          | -.090(.234)     | -1.767   | -.095(.236)  | -1.863   |
| 정치적<br>시민권         | 사회참여     |             |          |                  |          |                 |          | .004(.026)   | .097     |
|                    | 투표경험     |             |          |                  |          |                 |          | .037(.071)   | .950     |
| $R^2 / \Delta R^2$ |          | .084        |          | .120 / .035      |          | .145 / .025     |          | .146 / .001  |          |
| F / $\Delta F$     |          | 11.924***   |          | 9.727 / 6.478*** |          | 7.212 / 3.147** |          | 6.409 / .480 |          |

주: \*\*\*  $p < .001$ , \*\*  $p < .01$ , \*  $p < .05$

다음으로 국적을 취득한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먼저 국적을 갖춘 상태에서 인구 사회학적 요인만을 투입한 모형 1의 설명력은 4.5%이며, 모형 적합도( $F=32.892$ )는 유의수준 99.9%에서 유의했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한국어 실력의 뛰어나다고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적 비취득 집단에서의 모형 1에 비해서는 설명력이 다소 낮았다.

경제적 시민권이 추가된 모형 2의 설명력은 7.5%이며 모형 1에 비해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3%p 증가했다. 모형 적합도( $F=31.126$ ) 및 모형 변화량( $\Delta F=27.656$ )의 유의수준은 99.9%에서 유의해 경제적 시민권의 추가로 인해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더욱 폭넓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시민권 요인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인구 사회학적 요인 가운데 성이 새로운 영향요인으로 등장했다. 즉 국적을 취득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생활만족도에 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시민권 요인인 주택 점유형태, 생활격차, 경제활동 여부, 경제적 의사결정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됐다. 이는 국적이 없는 집단에 비해 경제적 시민권 요인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는 자가 주택을 소유할수록, 한국에서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만족할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경제적 의사결정에 본인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거나 또는 배우자와 동등하게 반영될수록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회적 시민권이 추가된 모형 3의 설명력은 8.9%로 모형 2에 비해 설명력이 1.4%p 증가하였다. 모형 적합도( $F=22.414$ ) 및 모형 변화량( $\Delta F=8.722$ )은 유의수준 9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경제적 시민권 요인이 투입된 모형 2에서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시민권 요인 가운데서는 사회적 차별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즉,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지 않을수록, 한국 문화에 동화된 태도를 보일수록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치적 시민권 요인이 투입된 최종 모형인 모형 4의 설명력은 9.3%이며 모형 3에 비해 0.4%p의 설명력 증가를 보여주었다. 또한 모형 적합도( $F=20.803$ ) 및 모형 변화량( $\Delta F=8.033$ )의 유의수준은 99.9%에서 유의했다. 이는 국적이 없는 집단에서는 설명되지 않았던 정치적 시민권의 영향력이 새롭게 포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치적 시민권 요인 가운데에서는 사회참여 경험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사회참여

활동은 두 집단의 정치적 시민권을 구분하고 이들의 생활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결혼이주자들에게 있어 한국에서의 참정권은 그 의미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이는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권적 측면에 있어 사회참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적극적 행위 가운데 하나이다. 결국 한국 국적의 취득은 이처럼 결혼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힘’을 부여하고, 이 힘이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만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표 8. 형식적 시민권을 갖춘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 구분                 | 모형 1          |             | 모형 2      |                    | 모형 3      |                   | 모형4         |                   |           |
|--------------------|---------------|-------------|-----------|--------------------|-----------|-------------------|-------------|-------------------|-----------|
|                    | Beta(SE)      | t           | Beta(SE)  | t                  | Beta(SE)  | t                 | Beta(SE)    | t                 |           |
| 인구<br>사회학적<br>요인   | 성             | -.010(.049) | -.548     | -.044(.051)        | -2.444*   | -.047(.051)       | -2.620**    | -.051(.051)       | -2.836**  |
|                    | 연령            | -.070(.002) | -3.854*** | -.052(.002)        | -2.825**  | -.059(.002)       | -2.990**    | -.063(.002)       | -3.167**  |
|                    | 학력            | .019(.014)  | 1.094     | .032(.014)         | 1.876     | .033(.014)        | 1.939       | .021(.014)        | 1.214     |
|                    | 가구소득          | .173(.012)  | 9.912***  | .171(.012)         | 9.673***  | .175(.031)        | 9.611***    | .168(.013)        | 9.224***  |
|                    | 한국어실력         | .070(.004)  | 4.035***  | .078(.004)         | 4.537***  | .067(.004)        | 3.723***    | .063(.004)        | 3.495***  |
| 경제적<br>시민권         | 주택점유          |             |           | .070(.032)         | 4.064***  | .063(.032)        | 3.641***    | .055(.032)        | 3.135**   |
|                    | 생활격차          |             |           | .136(.006)         | 8.114***  | .130(.006)        | 7.784***    | .131(.006)        | 7.846***  |
|                    | 경제활동유무        |             |           | -.071(.032)        | -4.213*** | -.068(.032)       | -4.011***   | -.069(.032)       | -4.121*** |
| 사회적<br>시민권         | 경제적결정         |             |           | .045(.036)         | 2.647**   | .045(.036)        | 2.624**     | .045(.035)        | 2.630**   |
|                    | 사회적차별         |             |           |                    |           | -.089(.031)       | -5.380***   | -.089(.031)       | -5.410*** |
|                    | 서비스경험         |             |           |                    |           | .018(.012)        | .976        | -.001(.001)       | -.044     |
|                    | 서비스욕구         |             |           |                    |           | -.007(.001)       | -.388       | -.011(.001)       | -.611     |
|                    | 다문화수용         |             |           |                    |           | .077(.011)        | 4.734***    | .077(.011)        | 4.724***  |
|                    | 국기초수급<br>의료보호 |             |           |                    |           | -.013(.105)       | -.503       | -.016(.104)       | -.618     |
| 정치적<br>시민권         | 사회참여          |             |           |                    |           |                   | .071(.015)  | 4.003***          |           |
|                    | 투표경험          |             |           |                    |           |                   | -.008(.033) | -.460             |           |
| $R^2 / \Delta R^2$ |               | .045        |           | .075 / .030        |           | .089 / .014       |             | .093 / .004       |           |
| F / $\Delta F$     |               | 32.892***   |           | 31.126 / 27.656*** |           | 22.414 / 8.722*** |             | 20.803 / 8.033*** |           |

주: \*\*\*  $p < .001$ , \*\*  $p < .01$ , \*  $p < .05$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자가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면에서 실제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국적’의 취득 여부에 따라 시민권적 권리 실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자 15,001명 가운데 국적이 없는 사람은 9,172명(61.1%), 있는 사람은 5,829명(38.9%)으로 나타났으며 성비는 8:2로 ‘이주의 여성화’라는 말처럼 여성의 수가 월등히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이들의 가구소득은 100만원~300만원 사이였으며, 한국어 실력은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국적 여부에 따라 주요 변수들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활만족도는 국적이 없는 경우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국적을 지닌 이들의 한국생활이 최소 3년 이상으로 국적이 없는 이들에 비해 더 길고, 모국에서의 사회적 지위보다 더 낮은 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택 점유 형태는 전·월세 및 사글세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 차별도 국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셋째,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국적이 없는 집단은 경제적 의사결정과 사회서비스 경험, 정치적 시민권인 사회 참여와 투표 경험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국적이 있는 집단은 성, 사회서비스 경험, 투표 경험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두 집단은 성, 경제적 의사결정, 사회서비스 욕구와 사회 참여에 대한 상관관계의 유의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넷째, 국적을 중심으로 이들의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적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국적이 없는 집단은 정치적 시민권에 대한 요인 추가에 따른 설명력의 변화량과 모형 변화량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정치적 시민권 요인이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유의한 수준에서 설명하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국적을 갖추지 못한 결혼이주자의 경우, 내용적 시민권의 일부만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 실질적 의미의 시민권 요인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국적이 있는 집단은 정치적 시민권 요인이 추가되어도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수준의 설명력 변화량과

모형 변화량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는 국적이 없는 집단의 경우 연령, 가구소득, 한국어 실력, 생활격차, 경제적 의사결정, 사회적 차별, 의료보호 수혜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국적이 있는 집단의 경우 성, 연령, 가구소득, 한국어실력, 주택점유형태, 생활격차, 경제활동 여부, 경제적 의사결정, 사회적 차별, 다문화수용성, 사회참여 경험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국적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의 설명 요인이 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만큼 국적 취득이 내용적 시민권의 보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 높은 차원의 시민권 보장을 가능케 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 향상에 있어 경제적 욕구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시민권적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다문화 실천현장에서는 유독 자립과 자활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적 욕구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이들의 시민권적 욕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차별이 다양한 상황과 대상으로부터 경험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적절한 대응 교육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사회적 차별은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한 만큼 이에 대한 많은 실천적 대안이 요구될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집단 모두 사회서비스의 경험과 욕구가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가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결혼이주자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두 집단 모두 사회참여 수준은 비슷하나 국적 취득 요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제도는 모두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사회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의미에서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현재로서는 형식적 시민권이 갖추어져야만 내용적 시민권도 보장받는 형태이다. 따라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법적, 사회권적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모든 이주자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목적 때문에 이주를 선택하므로 이들의 경제사회적 요소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결혼이주자의 경우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경제사회적 요소가 생활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한국 사회 정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사료된다. 셋째,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차별 경험이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경미, 2012)로 미뤄볼 때, 이들의 사회적 차별은 결혼이주자의 한국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결혼이주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자의 적응은 제도적 태도 위에 형성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오현수, 2012). 결국 이들의 생활만족과 적응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사회 참여와 투표 참여와 같은 정치적 권리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원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지닌 연구대상에 대한 대표성 확보의 한계를 극복한 것과 시민권 이론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데에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권리의 범위이다. 과연 어디까지가 이들의 경제·사회·정치적 권리인가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의에 따라 이를 탐색적으로 나눠 살폈으나, 향후 이를 분명하게 할 기준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시민권은 위계적 성격을 띠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마샬의 시민권 이론에 기초하여, 이를 경제·사회·정치적 시민권 순으로 위계화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시민권적 해석에 맞춘 것이라 볼 수 있다(설동훈, 2013). 셋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자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결혼이주자의 국적을 중심으로 생활만족도의 문화적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행연구에서는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적 요인이나 사회관계망 역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요인들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시민권의 형태 속에 담아내지 못했다. 다섯째,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측정상의 한계이다. 이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설문 내에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구조화된 척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생활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한 문항짜리 설문이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 전체를 대표하는 척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향후 조사에서는 검증된 형태의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김석준은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자본, 세대 간 균열, 불평등이며, 현재 다문화가족과 청소년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E-mail: welfare@catholic.ac.kr)

현동길은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빈곤, 불평등이며, 현재 다문화가족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E-mail: nalo24@naver.com)

김휘정은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 사회보험, 노동시장이며, 현재 비정규직의 내부 이질성에 따른 사회보험 배제 수준의 차이를 연구하고 있다.

(E-mail: beatrize@nate.com)

이지현은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국가정책, 사회복지전달체계 등이며, 현재 수원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mail: 98traum@daum.net)

## 참고문헌

- 강현(2012). 여성 결혼 이민자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연구: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
- 구인희, 손병돈, 엄기욱, 정재훈, 이수연(2009).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방안 탐색 -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9(2), pp.126-150.
- 권구영(201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 사회통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 35, pp.104-140.
- 길강목(2011).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다문화사회연구, 4(2), pp139-168.
- 김경미(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 만족도: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2), pp.185-208.
- 김나영(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
- 김두년(2013).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법학연구, 49, pp.325-347.
- 김안나, 최승아(2012).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pp.295-334.
- 김연희, 서영준(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학연구, 24(1), pp.35-62.
- 김진희, 박옥임(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 pp.127-160.
- 남인숙, 안숙희(2011).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 만족도 비교 여성간호학회지, 17(2), pp.99-108.
- 남지민(2012).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결혼이주여성 정책 방안 연구. 한국정치연구, 21(1), pp.255-277.
- 박미정, 엄명용(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pp.1-26.
- 박은희, 조인주(2012).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pp.29-54.
- 박진근(2013). 다문화구성원에 있어 국적취득의 법적 개선방향. 한양법학, 43, pp.495-517.

- 박현숙(2013). 윌 킴리카(Will 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이민인종연구회, 7, pp.11-22.
- 박희봉, 이희창(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 경제, 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3), pp.709-729.
- 설동훈(2007). 국제노동력이동과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 한국·독일·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7(2), pp.369-419.
- 설동훈(2013). 국제인구이동과 이민자의 시민권: 독일·일본·한국 비교연구. 한국인구학, 36(1), pp.21-50.
- 양진향 외(2012).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가족 적응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42(1), pp.36-47.
- 오금숙, 김윤정(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지지, 부부친밀감, 생활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건강학회지, 3(1), pp.15-25.
- 오은주, 정순희(2014). 결혼이민여성의 재무스트레스와 행복감에 대한 질적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3), pp.73-92.
- 오현수(2012). '다면적 관점'에서의 다문화사회 이해: 이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중심으로. 2012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185-199.
- 우지혜(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부평등, 사회적지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
- 유은광, 김혜진, 김명희(2012).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2(2), pp.171-179.
- 이다혜(2014). 시민권과 이주노동. 사회보장법연구, 3(1), pp.195-243.
- 장은애, 최영(2010).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정체성 유형과 생활만족도. 사회과학연구, 26(3), pp.1-25.
- 조동기(2010).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시민권에 대한 태도. 한국인구학 33(3), pp.53-73.
- 조희원(2014).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단일민족주의: 공존과 사회적 통합을 중심으로. 분쟁 해결연구, 12(2), pp.5-30.
- 황정미(2010).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행위전략의 다양성: 연결망의 유형화와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4), pp.1-38.

- Arendt, H. (1973).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Y: Harvest Books, 이진우, 박미애 (역)(2006). *전체주의의 기원*. 서울: 한길사.
- Bosniak, L. (2002). *Citizenship and Work*, 27 N.C.J. Int'l L. & Com. Reg. 497.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pp.310-357.
- Cohen J. L. (1999). Changing Paradigms of Citizenship and the Exclusiveness of the Demos. *International Sociology*, 14(3), pp.245-268.
- Cummins, R. A. (1996). The domains of life satisfaction: An attempt to order chao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8, pp.303-332.
- Jacobson, D. (1997). *Rights across Borders: Immigration and the decline of citizenship*. London: Brill.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pp.34-44.
- George, L. (1979). The happiness syndrome: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issues in the study of social-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hood. *The Gerontologist*, 19(2), pp.210-211.
- Marshall, T. H. (1964).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Marshall, T. H.(Ed.),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NY: Doubleday.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pp.134-143.
- Rojas, M. (2006). Lif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in domains of life: Is it a simple relationship?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pp.467-497.
- Veenhoven, R. (2004).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7, pp.1-27.
- Vinokur, A. D., & van Ryn, M. (1993). Social support and undermining in close relationships: Their independent effects on the mental health of unemployed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pp.350-359.
-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UK: Oxford University Press, 장동진, 황민혁, 송경호, 변영환(역)(2010). *다문화주의 시민권*. 서울: 동명사.
- Soysal, Y. N. (1994).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 Study of th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for Marriage Immigrants on Substantive Citizenship:**

## **Focusing on Obtaining their Korean Nationality**

**Kim, Seokjun**  
(Catholic University)

**Hyeon, Donggil**  
(Catholic University)

**Kim, Hwijeong**  
(Catholic University)

**Lee, Jiheon**  
(Catholic University)

---

This study aims to examine of civil rights for marriage immigrant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citizenship theory from T. H. Marshall. In this study, obtain of nationality was considered as formal citizenship and examined what differences occur between two groups according to whether they obtained korean nationality. Moreover, substantive citizenship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namely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itizenship and these were used to find out how developing type of social right have affect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s.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was used and analyzed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from this study showed that both groups had economic factor affecting on life satisfaction, but the group of korean nationality obtainers had more various factors such a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itizenships than people who did not obtain nationality. As shown through this findings, formal citizenship for marriage immigrants influence on their life and obtaining of korean nationality is the precondition for essential citizenship. Based on the study findings, implications for practice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s and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

**Keywords: Marriage Immigrants, Korean Nationality, Life Satisfaction, Formal Citizenship, Substantive Citizenship**